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서상열 의원
- 의안번호 : 제1537호
- 발의일자 : 2024년 2월 2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2. 제 안 이 유

-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 이용 신청 시 서울시민과 타 시도 주민이 동일한 여건에서 신청함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예약이 어려워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캠핑장 이용 시 서울시민에게 우선접수 편의제공 및 10%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2호가목의 야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우선 예약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 이용신청 시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이용료를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 별표 2(붙임 참조)는 잔디광장, 운동장, 축구장, 캠핑장 등 다양한 시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민에 대한 공원 시설 우선 예약 및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캠핑장 우선 예약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현재 운영 중인 캠핑장 이용이 어렵다는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캠핑장(총 9개소)¹⁾ 중 4개소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다수가 서울시민(87%)²⁾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민 및 타 지역민의 전체 캠핑장 이용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타 지역민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노을공원 캠핑장(고양시 경계), 중랑캠핑숲(구리시 경계) 등을 포함하여 현재 운영 중인 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³⁾

1) 서울시 캠핑장 현황(9개소): 노을공원, 중랑캠핑숲, 강동그린웨이, 초안산, 천왕산, 앵봉산, 서울대공원, 한강난지, 우이동

2) 연도별 이용자 현황(최근 5년) 중 4개소(강동그린웨이, 초안산, 앵봉산, 우이동) 이용자(누적): 서울시민(87%)

3)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캠핑장 3개소(노을공원, 중랑캠핑숲, 천왕산) 및 기타 2개소(서울대공원, 한강난지공원)은 이용자 주소를 정보화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써 많은 관광객 및 타 지역민이 방문하여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도권 버스, 기후동행카드 등 교통 정책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상생하는 ‘공동생활권’⁴⁾ 정책을 모색하고 확장해⁵⁾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원시설 이용(우선예약 및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4) 연합뉴스(2023.7.11.), 오세훈·김동연·유정복,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 신년 기자간담회(2024.1.17.), 오세훈 시장, “수도권 버스,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것과 같이 경기도민이 혜택과 배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조선비즈(2023.9.15.), 오세훈 시장, “기후동행카드 도입 서둘러야 경기도민도 혜택”, “경기도민들의 연계호환을 위해 경기도 지자체장이 도와줄 것을 요청”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 <개정 2021. 3. 25.>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 156,000	300,000~ 390,000		
		인조 잔디		55,000~ 82,500	110,000~ 143,000		
	풋살 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야영장(캠핑장)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사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일당)	1,000~20,000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8시간) 단위 계산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실내공간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 키 140cm 이상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 청소년·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 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이코 산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3,000 ~ 6,000 2,000 ~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 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서울 대공원	성인 야구장	1일	70,000~91,000	200,000~2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 (토, 공휴일은 제외) ◦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42,000~54,600		
	리틀 야구장	1일	35,000~46,000	100,000~130,000	
		3시간	21,000~27,300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 4,000 1,500 ~ 3,000 1,000 ~ 2,000		